

□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요지

1. 제안 이유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른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불가피하다. 또 무고하고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 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 및 권한오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서로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수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의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제정하였고,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공소청과 중수청의 신설 및 검찰청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인권보장을 근간으로 한 민주적 수사절차를 위해 내·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그 속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개정될 필요성이 커졌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소청법, 중수청법 신설을 반영한 개정

- ▶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기초로 한 중수청·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경찰 국수분,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음. 종전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신설된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개정함.

- ▶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은 이제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됨. 검사의 영장 지휘권을 삭제하고 개정 취지에 맞게 정리함. (개정안 제81조, 제83조, 제115조 등)
- ▶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경우 경찰에게 10일, 검사에게 10일 + 10일(기한 연장)의 권한이 있었음. 그러나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검사에게 부여된 10일의 기한 연장은 불필요해 졌음.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삭제함.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준비를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송치 후 피의자 구속기간을 현행대로 10일로 함. 그 결과 구속기간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10일, 송치 후 기간으로 10일로 함. (개정안 제202조, 제203조)
- ▶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구속사건을 송치하면 피의자의 신병을 경찰이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이 수사기관에 의해 이뤄진다면 피의자의 신병을 굳이 검사에게 인치할 필요성은 없어졌음. 그에 따라 구속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신병은 그대로 수사기관이 인치하는 것으로 하고,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함. (개정안 제202조, 제203조)
- ▶ 구속기간을 종래에는 수사기관별로 나누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검사의 구속기간’으로 호칭하였음. 그런데 검사에게 더 이상 수사권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호칭은 적절하지 않음. 종전의 위 호칭을 ‘구속기간’, ‘송치 후 구속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개정안 제202조, 제203조)
- ▶ 이를 반영한 개정 규정들
제32조의 2(대표번호인),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의 관계 등), 제196조(검사의 수사) 삭제, 제197조(사법경찰관 관리),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2조(구속기간), 제203조(송치 후 구속기간),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09조(준용규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9조(준용규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5(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 등의 사건 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56조(타관송치),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9조(고소인 등에의 공소제기이유고지),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312조(사법경찰관 등의 조서),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417조(동전),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집행지휘),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

(동전),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나. 수사의 일반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

- ▶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사의 일반원칙, 즉 불구속 수사의 원칙,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불이익금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수사의 통칙으로 법률로 명문화함. (개정안 제195조의2 내지 6)

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음)

- ▶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정함.
- ▶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완수사권은 그 성격상 직접 수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보완수사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거나 확정적일 수 없어서 보완수사권의 존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한 남용 억제라는 개혁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보임. 이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미진한 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아래 라항과 같이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의 불확실성,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지연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보완수사요구제도를 보완하고, 차항의 내용처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의 검사 면담 신청 제도를 신설하여 사건관계인이 검사를 직접 대면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 보완수사권 등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므로 종전 직접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그에 맞게 개정함.

라.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개선(구체적 대상과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요구, 보

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의무 명확화 및 이행기간 명시)

- ▶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이행 여부의 불확실성, 수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 요구에 회신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기한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얻어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97조의2 제3항 등)
- ▶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97조의2 제1항)

마. 입건 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함

- ▶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 훈령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입건 전 조사’에 관한 규정 중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입건 전 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개정안 199조의2 내지 10)

바.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함.

- ▶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경찰청훈령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에 산재해 있던 수사절차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들, 예컨대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심야 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변호인의 메모 보장, 변호사·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변호인에 대한 수사 등 진행 상황 통지 등의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함.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고 수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개정안 제200조의7, 8 및 제243조의3 내지 8)

사. 피의자신문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함

- ▶ 피의자신문의 수사절차 과정에서 강압 또는 회유 등을 이용한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신문조서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 위와 같은 우려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하는 모든 피의자신문에 관해서 영상녹화를 의무화함. 이를 통해 사후 언제든지 그 신문절차의 과정과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244조의2)

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함.

- ▶ 압수수색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법원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르대법원이 2023년에 도입하려고 했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함. (개정안 제215조의3)

자. 전건송치 제도는 두지 않음

- ▶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건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지연시키고, 무고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
- ▶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협의 당시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그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불송치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이유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검사로 하여금 90일 동안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전건송치제도로의 복원은 그와 같은 합의

이전의 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 ▶ 전건송치제도가 아니더라도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 송부 제도(모든 사건의 기록이 송부되고, 검사가 이를 90일 동안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음),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부실수사, 암장수사에 대한 유효 적절한 통제 방법이 될 수 있음.

차. 고소인 등의 검사 면담 신청 제도 신설

- ▶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기관의 과잉수사, 부실수사 또는 기소 여부의 판단을 위해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대면할 필요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대면하여 진술을 듣는 제도(‘고소인 등의 검사 면담 신청’ 제도)를 신설함. (개정안 제245조의11)
- ▶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방안으로는 ①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건관계인들이 진술을 할 때 직접 들을 수 있는(참관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② 송치 또는 불송치 후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①의 방안은 향후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내용을 정할 때 구체화하도록 하되, 형사소송법에는 ②의 방안으로 사건관계인들의 검사 면담 신청 제도를 둬.
- ▶ ①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고발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이의신청의 요지를 진술하기 위해 검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②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 등이 자신의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및 변론을 위해서 검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¹⁾ 사건관

1) 서류상 공소시효의 도과 등 불송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임.

계인들을 직접 대면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내용의 제도 신설을 통해 검사가 사건관계인들의 진술 취지를 직접 대면하여 검사가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이 제도가 신설된다면 검사가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대면하여 그들이 하는 진술을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 발생하는 염려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 고소인 등의 검사 면담 신청 제도는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대면하여 진술을 듣는 것을 내용으로 함.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제도는 수사권의 내용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님.

카.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재수사 요청 등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

- ▶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시 동일한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때 종전 수사를 했던 기관과 다른 수사기관(경찰 국수본 수사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중수청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 국수본이) 또는 상급 수사기관에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개정안 제245조의8 제2항)
- ▶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때 수사기관이 재수사 대상과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재수사 요청을 하도록 함. (개정안 제245조의8 제2항)

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둠

-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6개의 특례법에 산재되어 있음.

- ▶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위 6개의 특례법에 정한 내용 중 수사절차에 관한 피해자 권리에 관한 일반 규정들, 예컨대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규정, 특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해서는 수사에 관한 일반절차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함. (개정안 제245조의12 내지 18)
- ▶ 현행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만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고발인, 범죄피해자 등으로 확대함. (개정안 제245조의7)
- ▶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① 피해자가 증인신문과 별도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② 법원이 청취한 피해자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함. (개정안 제294조의2)
- ▶ 피해자의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고, 만약 재판장이 이를 불허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한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의 절차로 다룰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294조의4)
- ▶ 양형심리를 위한 조사 절차를 신설하여 보호관찰소를 통해 피고인에 관한 사정 외에 피해자의 피해 결과,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 양형 의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생명·신체 침해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위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정함.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함. (개정안 제296조의3)
- ▶ 성범죄 사건의 재판 등에서 유·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평판,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 이뤄지면서 피해자의 인격권이 추가 침해되거나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재판장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불필요한 변론 및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개정안 제299조). 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도록 함. (개정안 제266조의5, 제299조의 2)

파.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 ▶ 현재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또는 통제방안으로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통한 검사에 의한 통제 방안 외에 수사기관 내에서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해서 시민들에 의한 통제 방안을 추가해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수사기관 내에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고, 수사 품질에 관한 통제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함. (개정안 245조의19 내지 21)
-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는 수사기관 부서장은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을 동일하게 한 경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사법경찰관 등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즉,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하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제도가 임의적 절차인 것처럼) 사건관계인 등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하. 수사인권보호관의 임명

- ▶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임명하여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 (개정안 제245조의 22)
- ▶ 수사인권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 수사인권보호관은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수사기관 책임자에게 시정 요청(수사 방법의 변경, 수사관 교체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수사기관 책임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규정 삭제

- ▶ 공소청법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해서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함 (개정안 제245조의10)

너. 재정신청 제도의 개선

- ▶ 고소권자 외에 고발인과 피해자에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 재정신청 사건의 실질화를 위해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으로 함. (개정안 제260조 제1항)

- ▶ 현행 재정신청 기한은 10일로, 너무 짧아서 신청인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충실한 신청 준비를 위해 그 기간을 늘이는 것이 필요함.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늘임. (개정안 제260조의 제3항)
- ▶ 재정신청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재정신청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개정안 제260조 제5항 신설)
- ▶ 현재 재정신청 사건은 서면 심리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도 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심리 방법은 재정신청인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것임.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리와 판단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게 할 필요성이 큼. 이를 위해 재정신청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 (개정안 제262조 제3항 신설)
- ▶ 재정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현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는 검사의 소극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라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함. (개정안 제262조의5 신설)